

김 중 석
 강남대학교 도시건축공학부 교수
 by Kim, Jong-seok

학교시설의 공공성

The School as a public facility

학교시설의 성격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시설 중 학교는 타 시설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종 개발관련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학교시설이 지닌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이용계층

공공시설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특정집단인지 아니면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가능한 시설인지의 여부에 따라 시설물의 성격이 공적 성격을 지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학교를 제외한 다른 시설의 경우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용계층의 제한은 없는 편이나 과거 학교급별로 직접적인 이용자가 학생으로 제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가 단지 학령기의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협의의 의미만을 적용할 경우이며, 평생교육이나 생애교육 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학교시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의 학교시설은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서의 기능성이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이 일

학교의 경우 상기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계층을 제외한 모든 비교항목에서 매우 공적 성격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용계층의 경우도 과거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던 폐쇄적인 운영하에서의 학교와는 달리 현재는 운동장을 지역민들을 위한 시설로 개방하는 경우로부터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지역민들의 각종 행사가 학교내에서 행하여지는 등 이제는 개방적인 시설로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계층의 제한은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경향은 더욱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학교설립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법령 내 학교시설의 위치

법령간의 관계

학교의 신설에 관련되는 각종 개발에 관련된 법령들의 경우 학교 시설의 신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각 법령들에서 학교가 점하고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살펴 현재 학교신설에

주요 법령별 제정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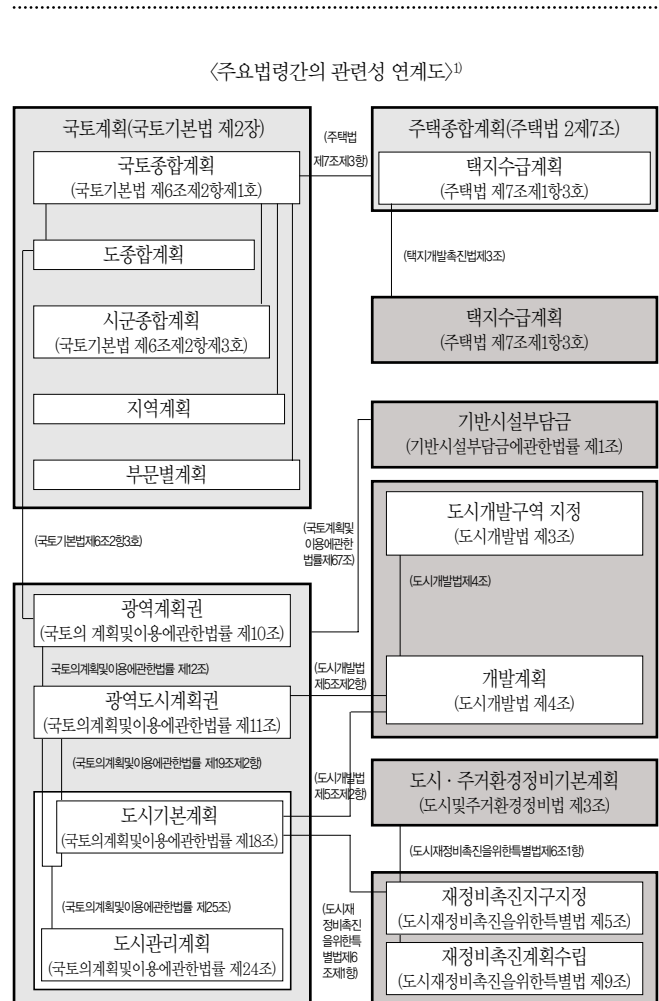
법령명	제정목적
국토기본법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u>건전한 발전</u> 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공공복리의 증진</u> 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이 법은 <u>都市地域의 時急한 住宅難을 解消</u> 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 取得·開發·供給 및 管理 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u>國民住居生活의 安定과 福祉向上</u> 에 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이 법은 <u>都市開發</u>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計劃的이고 體系的인 都市開發을 도모하고 <u>쾌적한 都市環境의 造成</u> 과 <u>公共福利의 增進</u>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도시의 균형 발전</u> 을 도모하고 <u>국민의 삶의 질 향상</u>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도시환경을 개선</u> 하고 <u>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u>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	이 법은 公立의 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的 造成·開發·供給 및 管理經費의 부담 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u>공공복리의 증진</u> 과 <u>재산권의 적정한 보호</u> 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있어서 법령의 적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들이 제정된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개발에 관련된 법령 중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과 아울러 이외에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관련법령 중 학교신설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법률의 제정목적은 살펴보면 앞의 표에서와 같이 개별 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의 건전한 발전, 국민의 복리향상, 福祉向上, 공공복리의 증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國民住居生活의 安定, 주거생활의 질 향상, 쾌적한 都市環境의 造成,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 등과 같이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중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각각 법률은 상호간에 매우 높은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법령들 간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본 그림에 제시된 법령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기본법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제6조 (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②..... 1.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주택법 제7조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주택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豫定地區의 지정등(개정 1999.1.25)) ①건설교통부장관.....은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광역도시계획에는 당해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②광.....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①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금) ②.....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3조 (都市開發區域의 지정 등) ①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4조 (開發計劃의 수립 및 변경)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開發區域을 지정하는 者.....는 都市開發區域에 대한 都市開發事業의 計劃.....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조 (開發計劃의 내용) ② 「..... 開發計劃의 내용이 당해 廣域都市計劃 또는 都市基本計劃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자구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자구를 지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재정비촉진자구 지정의 요건) ①시·도지사는 재정비촉진자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과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요법령간의 관련성 연계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의 8개 법령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대적으로 타 법보다 상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에서의 학교가 공공시설이 아닌 기

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타 법령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적용법령별 학교시설의 소속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대상으로 다른 기반시설과의 비교를 통하여 학교시설이 지니고 있는 법령상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주요 관계법령에서 학교시설의 위치

법령	주요시설	법령별 적용 여부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철도	항만	기타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	○	○	○	○	○	○	○	○	○	...
	공공시설	○	○	○	X	○	○	X	○	○	○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 관련된 시설	○	○	○	○	X	X	X	X	X	X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		○	○	○	○	○	○	○	X	X		
도시개발법	기반시설 ²⁾	○	○	○	○	○	○	○	○	○	○	...
	공공시설	○	○	○	X	○	○	X	○	○	○	...
	제12조제1항에서의 공공시설 ³⁾	○	○	○	○	○	○	○	○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기반시설 ⁴⁾	○	○	○	○	○	○	○	○	○	○	...
	제28조제1항에서의 기반시설 ⁵⁾	○	○	○	X	○	○	X	○	○	○	...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시설 ⁶⁾	○	○	○	○	○	○	○	○	○	○	공공청사 등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	○	○	○	○	○	○	○	○	○	○	...
	공공시설 ⁷⁾	○	X	X	○	○	X	X	X	X	X	공공의 청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시설		○	○	○	○	○	X	○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의 정비기반 시설		○	○	○	X	○	○	X	X	X	X	...

2)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서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있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 동일하다.(단,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3) '도시개발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의 위탁 등)'에서 '시행자는 항만·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0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공공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정의.
-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서는 동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공공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최소한 이 조항에서는 기반시설이 공공시설을 의미함을 명시하고 있다.
- 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에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종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과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 7)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의2제5항제2호에서는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라고 하고 있는 등 본 법령의 여러 부분에서 학교가 공공시설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공공시설' 부문 참조)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로 학교는 도로, 수도, 하수도, 공원, 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철도, 항만 등과 같이 기반시설로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률에서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시설로 지역의 생활환경에서 필수적인 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시설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시설로 분류하여 이 4가지 시설의 용량에 따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대상 9개 시설 중 철도, 항만을 제외한 7개 시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설로써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기반시설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녹지를 제외한 8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의 정비기반시설로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철도, 항만을 제외한 5개 시설이 해당된다.

상기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 수도, 하수도는 5개의 법령 모두에 해당되며, 학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시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정비기반시설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나머지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이 불량한 기존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학교의 경우와 같이 학령인구의 증가를 급격하게 초래하는 시설과의 연계성이 약하므로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시설활용 사례(학교공원)

학교공원의 개념

학교공원이란, 학교와 공원이 인접 또는 동일부지 내에 병합하여 배치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와 공원사이에는 담장, 도로 등 어떠한 경계도 없으며 두 시설이 상호 복합되어 있다. 즉 학교공원 내에 주민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 및 학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일환이다.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의 복합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와 공원이 서로의 시설을 공유하는 것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공원의 시설이나 자원을 이용하여 현장학습을 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은 공원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시설간의 상호복합이란 공간적 복합, 기능적 복합, 관리 운영적 복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교공원의 배치형태는 다음과 같이 3종류로 분류된다.

- ① 기존 공원 또는 인접부지에 학교 설치
- ② 기존 학교 또는 인접부지에 공원 설치
- ③ 동일부지에 학교와 공원을 동시에 설치

학교공원의 필요성

학교는 통학거리와 취학인구를 고려하여 도시의 기간시설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학교가 교육의 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현대에 와서는 학교가 지역사회 중심의 장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의 모든 시설은 지역사회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범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환경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교육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대안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학교공원(school park)제도이다. 이 제도는 도시의 기간시설로 배치되는 공원과 학교가 병합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중앙공원과 함께 배치하는 제도이다. 이는 도시에서 지가상승으로 충분한 공원과 교지를 확보할 수 없게됨에 따라 고안한 절충안으로 우리 현실에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교는 교육시설 기준령에 따라 시설이 구비되므로 어느 정도 최저 운동 및 학습공간은 마련되나 교재원 등 학습시설이 대부분 부족하고 소음에 시달린다. 또 공원은 대부분 구릉지에 배치되므로 운동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학교와 공원을 인접해서 배치시키면 상호 보완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공원 안에 학교가 배치됨에 따라 학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교를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이중 시설투자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관리상의 문제점은 학교에 위탁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금후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도시환경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나 이 같은 학교공원제도의 도입이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 및 정책 전문가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교공원의 역할

보다 좋은 교육환경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의 교육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학교교육은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지식 전달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장애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을 시키는 환경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공원은 지식전수도 암기·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실물을 관찰하고 직접 참여하여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튼튼한 체력만이 앞으로 닥칠 험한 사회생활의 가장 값진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운동 환경의 제공도 학교공원의 역할이다.

- ① 교과서에 언급된 동·식·광물 등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소동식물원 및 실물 교육장
- ② 조상의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사당
- ③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며 체력을 다질 수 있는 운동 공간

사회교육시설 확충

학교시설은 대부분 제한된 시간에만 이용되고 있다. 지역사회입장에서 보면 학교시설은 매우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은 일별, 주별, 월별, 년별로 상당기간이 유휴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이 제한적인 특정시간대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학교실정으로는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점이 있지만 학교와 공원을 복합화하면 학교가 순수교육기능과 지역사회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 즉 문화관련시설, 체육관련시설, 교육관련시설 등 평생교육 및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등의 정비가 용이하다.

- ① 학교시설 복합화
- ② 학교 개방
- ③ 학교 공원화

지역주민의 활동과 휴식의 장소

학교공원의 푸른 숲과 오픈 스페이스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레크리에이션활동, 건강운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거점이 된다. 즉 1)어린이와 지역주민에 의한 식수 등 시민이 참가하여 학교공원을 정비한다. 2)지역주민의 스포츠,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서 건강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다. 3)연령에 관계없이 자연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학교공원의 정비·관리 및 녹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① 주민쉼터
- ② 건강을 위한 운동 활동
- ③ 평생교육의 장
- ④ 지역주민참가의 학교공원 꾸미기 운동

도시의 안전성 향상

화재, 대설, 홍수, 지진 등 위험성이 높은 밀집시가지에서는 재해시의 피난지, 피난로, 연소방지, 복구·부흥의 거점이 되는 방재공원의 정비가 필요하다. 학교공원은 방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즉 1)주변지역으로부터 피난자를 수용하여, 시가지 화재 등으로부터 피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광역 피난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2)구조 활동을 위한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여 소방, 구호, 복구·부흥의 거점이 된다.

- ① 피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학교공원
- ② 소방·구원활동의 거점이 되는 학교공원

지역 활성화

중심 시가지에 적극적으로 학교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그 지방의 전통문화 보존,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지역간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즉 1)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업 체험 등과 같은,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 2)학교공원 내에 그 지방의 전통 문화 및 상징물을 복원하여, 관광·교육의 중심지로 한다. 3)학교공원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중심 시가지에 설치하여 공원·녹지공간으로 활용한다.

- ① 자연 자원의 활용
- ② 중심 시가지 활성화
- ③ 역사적 자원의 활용

양호한 도시환경을 제공

지구 온난화 방지, heat Ireland현상의 완화, 다양한 생물 보존 등은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들의 해결책은 도시공원의 정비, 녹지 보존, 녹화 추진 등을 통하여 도시에 무성한 숲과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학교공원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소, 또는 실천학습의 장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1)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새로운 학교공원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창출한다. 2)학교건물의 옥상녹화를 진행하는 것에 의하여, heat Ireland현상을 완화한다.

- ① 새로운 학교공원사업 추진
- ② 도시 녹화 추진

학교공원의 외국(일본名古屋市)사례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에는 시립초등학교가 259교 있으며, 이들 중 약 40%에 해당하는 109교가 공원에 인접해 있다. 또한, 학교와 공원사이에 도로나 담장 등의 경계가 없이 학교와 공원을 일체화

하여 계획·정비한 학교공원은 전부 8개교이다.

※ 참조 : 본 원고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연구“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분석 및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

일본 나고야시(名古屋市)의 학교공원

설치년도	위치(구)	초등학교 (공원)	교지면적 공원면적 (㎡)	학교공원 면적	교지면적 공원면적 (㎡)
1983년	名東	平和が丘 초등학교 (平和공원)	12,128 95,000	8,200	4,720 3,480
1984-87년	守山	大森北 초등학교 (雨池공원)	13,196 11,700	17,600	7,600 10,000
1985년	東	矢田 초등학교 (矢田공원)	11,778 4,400	9,100	4,800 4,300
1986년	西	榎 초등학교 (榎공원)	5,771 3,700	5,582	1,880 3,702
1989년	北	楠西 초등학교 (會所공원)	9,809 2,500	8,100	5,600 2,500
1990년	天白	大坪 초등학교 (植田大坪공원)	10,502 7,100	12,300	5,400 6,900
1991-92년	千種	見付 초등학교 (見附공원)	14,556 7,300	8,000	7,300 700
1992년	西	浮野 초등학교 (横井공원)	11,690 2,400	8,300	5,900 2,400
합 계			8개 초등학교, 8개 공원		

결 론

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 추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기반시설로만 규정하고, 공공시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교는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다.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남은 부분에 학교를 배치됨에 따라 부적절한 곳에 학교가 위치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교육청내에 교육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개발계획이 지역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간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각종 개발시에는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교육환경이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악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활성화

공공시설로서의 학교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공원 등과 같은 학교 복합화 시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복합화 사업에 대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학교공원 등과 같은 학교복합화 사업을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